

복수 사증

발급내용

단기초청(C-3-1), 일반관광(C-3-9), 단기상용(C-3-4)

사증종류 (유효기간/체류기간)

복수 (M): 1년/90일 / 3년/90일 / 5년/90일 / 5년/30일

상기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.

- 3년 복수사증: 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을 받고, 2회 이상 방한경력이 있고 체류실태가 건전한 자. 복수사증 체류기간 중 불법취업이 의심(입국하여 90일간 계속해서 체류하는 자 등)되거나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증발급 제한
- 5년 복수사증: 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을 받고, 과거 체류실태가 건전한 자, 빈번 출입국자 해당 신청자
- 3년, 5년 복수사증신청은 소지하고 있는 복수사증 만료일 전 1개월 부터 신청가능

아래 'A ~ O'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

A. 우리나라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

신청인 준비서류
1. 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2. 여권/여권사본 1매
3. 신청자격 입증서류: 경제력 입증서류 또는 출입국사실 입증서류 (사증발급확인서 및 출입국심사인 날인된 면의 사본)
4. 혼인관계증명서
5. 경제력 입증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자: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• 직장인: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, 재직증명서 • 기 타: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 내역서 등(공동명의 불가)
<p>※ 기존 복수사증 만료 전에 복수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경제력 입증자료 제출 생략</p> <p>※ 무사증 입국자(상륙허가 포함)는 방한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.</p> <p>※ 의료관광(C-3-3) 사증의 경우, 순수 치료비가 한화 2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만 횟수에 산입하되 다만, 사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기록만 산입함. 그 이외 체류자격으로 사증을 발급받고 한국을 방문한 경우는 횟수에 산입함.</p>

B.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 근무하는 임직원 (과장급 이상)

신청인 준비서류
1. 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2. 여권/여권사본 1매
3. 신청자격 입증서류 : 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, 유효한 외교/관용여권 사본(유효기간 최소3개월 이상)
4. 혼인관계증명서

C.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항공사·선사의 임직원 (과장급 이상)

신청인 준비서류
1. 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2. 여권/여권사본 1매
3. 신청자격 입증서류 : 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등
4. 혼인관계증명서

D. \$10,000 이상 사용한도의 국제신용카드 소지하고,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사용실적이 \$2,000 이상인 자 (현금서비스 제외)

신청인 준비서류
1. 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2. 여권/여권사본 1매
3. 신청자격 입증서류: - 은행확인서(신용 한도 표시), 거래내역서, 신용카드 사본
4. 혼인관계증명서

E. 우리나라와 자원·에너지 개발·판매 등을 위한 기업의 설치,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상담·계약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

신청인 준비서류
1. 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2. 여권/여권사본 1매
3. 신청자격 입증서류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원·에너지 관련 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(사업자등록, 개발특허증 등) • 한국과의 자원·에너지, 개발·판매 관련 계약서 • 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등
4. 혼인관계증명서

F. 국적취득자의 부모 및 자녀, 몽골 거주 국민의 배우자 또는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(19세 미만)

신청인 준비서류
1. 사증발급신청서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)
2. 여권/여권사본 1매
3. 신청자격 입증서류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적취득자 : 외국인등록사실 증명(출입국사무소 발급) 또는 기본증명서(상세) • 교민 : 여권사본, 거주등록증 사본 •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: 한국과 몽골 양국 혼인관계증명서
4. 가족관계 입증서류

G. 의사, 변호사,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

신청인 준비서류
1. 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2. 여권/여권사본 1매
3. 신청자격 입증서류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의사) 재직증명서, 의사자격증 • (변호사) 재직증명서, 대법원 변호사 증명서, 몽골 법률가협회 또는 몽골변호사협회 회원 확인서 • (교수) 재직증명서, 총장 명령서 <p style="color: red; margin-top: 5px;">※ 계약직이나 시간강사, 초빙강사, 객원교수 등 한시직 교원 불가</p>
4. 경제력 입증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자: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• 직장인: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, 재직증명서 • 기 타: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 내역서 등(공동명의 불가)
5. 혼인관계증명서

H. 기자, PD, 편집인 등 공관에서 인정한 언론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

신청인 준비서류
1. 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2. 여권/여권사본 1매
3. 신청자격 입증서류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직증명서, 사회보험증 사본,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, 사원증(기자, PD, 편집인 등) 사본 • 기자총연합회 공문서, 기자총연합회 회원증 사본 • 소속 언론사 납세증명서 <p style="color: red; margin-top: 5px;">※ 공관에서 인정하는 언론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자총연합회 회원이며, 언론인으로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
4. 혼인관계증명서 (최근 45일 이내 발급)

I. 연간 납세실적 5억투그릭 이상 기업 또는 납세실적 100대 우수기업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

신청인 준비서류
1. 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2. 여권/여권사본 1매
3. 신청자격 입증서류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 전자납세증명서(전년도 01.01~12.31일)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재직증명서,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
4. 혼인관계증명서 (최근 45일 이내 발급)

※ 몽골 100대 우수기업 목록 참고(별첨3)

J. 대한민국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(전문학사 제외)

신청인 준비서류
1. 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2. 여권/여권사본 1매
3. 신청자격 입증서류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위증사본, 성적증명서, 해외에서의 체류비자 사본 및 출입국스탬프 사본 또는 출입국확인서
4. 혼인관계증명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몽골 이외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학위증 사본에 아포스티유 공증 또는 출신학교가 속한 한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•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□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 (중국내 학력 학위 취득자의 경우)

K. 최근 6개월간 사회보험증상 월평균 급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 (2022.01월 현재 156만 투그릭)의 2배 이상인 사람 중 공관에서 인정하는 자

신청인 준비서류
1. 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2. 여권/여권사본 1매
3. 신청자격 입증서류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직증명서,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(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회보험 납부내역)
4. 혼인관계증명서

L. 유명 예술가·연예인 및 운동선수 중 공관에서 인정하는 자 (해당 분야에서 공훈을 세운자 등)

신청인 준비서류
1. 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2. 여권/여권사본 1매
3. 신청자격 입증서류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훈장 사본, 표창장 수요 확인서 사본 • 재직증명서, 사회보험증 사본 및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(납부 시 제출)
4. 경제력 입증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자: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• 직장인: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, 재직증명서 • 기 타: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 내역서 등(공동명의 불가)
5. 혼인관계증명서
<p>※ 공관에서 인정하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연예·예술분야) 국가 훈장을 수여 받은 자(노동영웅, 정부훈장(State laureate), 국민배우, 공훈배우, 예술공헌자) 등 공훈 인물 • (스포츠분야) 국가 훈장을 수여 받은 자(노동영웅, 공훈선수, 공훈코치), 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의 메달수상자, 세계선수권대회의 메달수상자, 아시안게임의 메달수상자, 각종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메달수상자 등 공훈인물

M. 재산(현금, 금융, 부동산 등), 개인 자산 5억 투그릭 이상 보유한 자

신청인 준비서류	
1.	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2.	여권/여권사본 1매
3.	신청자격 입증서류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부동산 등기부, 국가 인증 재산평가 감정소의 확인서(최근 6개월 이내 발급)최근 6개월 현금보유액 : 평균잔액증명서
4.	혼인관계증명서 (최근 45일 이내 발급)

N. 'A~M' 요건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(19세 미만)

신청인 준비서류	
1.	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2.	여권/여권사본 1매
3.	신청자격 입증서류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복수사증 소지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복수사증 소지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출생증명서복수사증 소지자의 여권 인적 사항 및 사증면 사본

O.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(최근 2년이내 출입국기록 1회 반드시 포함)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

사증 유효기간/1회 체류기간 : 5년 복수/30일

신청인 준비서류	
1.	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2.	여권/여권사본 1매
3.	신청자격 입증서류 : 대한민국 출입국사실 입증서류(비자 및 출입국심사인 날인된 면의 사본) ※ 다만,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계절근로자(C-4, E-8) 등 단순노무 자격, 선원자격 및 상륙허가 등으로 출입국한 기록은 산입에서 제외
4.	혼인관계증명서 (최근 45일 이내 발급)